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은 CFTC 규정 40.1(i)의 요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발행하며, 따라서 구속력 있는 규칙이 됩니다. 이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이하 "MRAN")은 MRAN의 공식 버전인 영문 텍스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문 텍스트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번역으로 인한 차이는 일체 구속력을 갖거나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번역본에 기재된 정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문본을 참조하십시오.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이 MRAN 내의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작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시 CME Group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MRAN에 모든 정보가 빠짐 없이 수록된 것은 아니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CME Group은 MRAN에 수록된 정보 또는 MRAN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지지 않습니다.

이 MRAN의 내용은 다만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CME Group이 편집한 것이므로 투자, 금융, 법률 또는 규제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보에 의존하기 전에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CME Group이 제공하는 이 문서에 포함된 자료, 정보 및 진술은 유가증권, 선물 계약, 구조화 상품, 규제 대상 투자 계약 또는 기타 일체의 투자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제안 또는 권유가 아니며,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사항도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한 개인의 계약이나 약속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관련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MRAN은 금융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금융 자문을 제공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생성하거나, 예금을 활성화하거나 예치하거나, 그 밖의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이나 청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MRAN에서 설명하는 모든 예는 설명을 위한 예시용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서 CME Group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MRAN과 그 정보는 (예측 및 그 안에 포함된 향후 전망 진술 포함) CME Group이 작성하였으며 고문이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성상, 향후 전망에 대한 진술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 많은 추측, 위험 및 불확실성의 대상이 됩니다. 향후 전망 보고서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MRAN에 수록된 향후 예측에 관한 진술은 해당 진술이 언급된 날짜에만 해당되며, CME Group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본 MRAN에서 논의된 모든 상품 및 상품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집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CME Group에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에 수록된 규칙 및 명세에 관한 모든 사안은 CME, CBOT, NYMEX 및 COMEX의 공식 규정집(rulebooks)에 따라 언급된 것입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현행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CME Group은 본 MRAN에 포함된 일체의 자료나 정보가 모든 관할권 또는 국가에서 사용되거나 허용된다고 진술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이나 배포가 일체의 관련 법규와 상반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공지문은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본 공지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따르는 위험은 관련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며, 항상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CME Inc., CBOT, NYMEX가 각각 공인 시장 운영자로 규제되고 CME Inc.는 증권 및 선물법(제 289 장)("SFA")에 따라 공인 청산소로 규제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CME Group중 SFA에 따라 규제 활동을 수행하거나 싱가포르의 금융 자문법(제 110 장)에 따라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의 어떤 규제 당국도 본 공지문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공지문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공지문의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독립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CME Group은 홍콩 증권선물 조례에 따라 선물계약을 거래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CME Group, Globe Logo, CME, Globex, E-Mini, CME Direct, CME DataMine,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와 Chicago Board of Trade는 시카고 시 무역위원회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의 상표입니다. NYMEX와 ClearPort는 뉴욕 상업거래소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상품거래소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이들 상표는 이러한 상표를 소유하는 당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수정, 복제,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도 허가, 양도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

거래소	<b>CME, CBOT, NYMEX, COMEX</b>
주제	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감독 책임
참조 규정	<b>규정 418, 432.W., 433, 444, 501 및 574</b>
권고일	<b>2024년 7월 1일</b>
권고번호	<b>CME Group RA2403-5</b>
발효일	<b>2024년 7월 16일</b>

관련 CFTC 규정 검토 기간을 조건부로 본 권고 공지문은 2024년 7월 16일 거래일부로 발효되며, 2021년 8월 30일에 공고된 CME Group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 RA2114-5를 대체합니다. 본 권고 공지문은 감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규정 432.W.의 잠재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시장규제부가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됩니다. 또한 본 권고 공지문에는 자주 묻는 질문 (FAQ)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규정 432.W. (“일반 위반”)에 의거하여 CME Group 거래소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가 직원과 대리인(agent)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위반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리인에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완전 자동화된 그리고 반 자동화된 모든 자동 거래 시스템 (“ATS”)이 포함됩니다. 또한 규정 433 (“대리인 행위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의거하여, 당사자는 고용에 의해 또는 사무실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임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acts), 부작위(omissions) 또는 불이행(failures)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집니다.

규정 418 (“거래소 관할 동의”)에 의거하여 거래소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모든 당사자는 거래소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는 거래소 규정 위반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감독 프로그램(supervisory programs)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비즈니스 모델, 조직 구조, 지리적 범위 및 거래소와 관련한 당사자의 행위의 규모와 복잡성을 포함한 기타 요인에 적합해야 합니다.

규정 432.W.의 본문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CME, CBOT 및 NYMEX/COMEX**

#### **432. 일반 위반**

다음은 위반 행위이다.

W.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직원과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당사자

본 권고 공지문에 관한 질문은 다음의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Minju Kang, Manager, Rules & Regulatory Outreach, +82 2 6297 0252

Erin Middleton, Direct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341.3286

Paige Gawrys, Senior Specialist,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872.5078

Aaron Smith, Executive Director, Investigations, 312.435.3754

Natalie Petric, Director, Enforcement Counsel, 312.435.3496

본 권고 공지문과 관련한 미디어 문의는 312.930.3434 또는 [news@cmegroup.com](mailto:news@cmegroup.com) 을 통해 CME Group의 기업홍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 책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당사자가 직원 또는 대리인(agent)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않았는지 평가할 때 시장규제부는 무엇을 고려하나요?**

**A1:** 당사자가 직원 또는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않았는지 평가할 때 시장규제부는 모든 당사자가 최소한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장규제부는 당사자의 감독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거래소 관련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것입니다.

시장규제부는 아래 사항을 성실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감독 의무 실패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 직원 및 대리인이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감독
- 직원에게 거래소 규정의 잠재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 제공
- 거래소의 조사, 경고문, 약식 제재금 또는 행정적 과징금 등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거래소의 통지에 의해, 또는 자체적인 식별을 통해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 교정 조치를 취함
- 거래소 규정의 잠재적 위반에 대하여 직원의 시장 활동을 선형적으로 모니터링
- 잠재적으로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통보 또는 경고를 받은 후에 직원의 시장 활동 모니터링
- 잠재적으로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통보 또는 경고를 받은 후에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계좌 변경 요청 모니터링, 감지 및 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절차 실행
- 내부 정책 또는 절차 시행 또는 준수
- 접근 정지된 트레이더/고객이 거래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 수립
- 직원이 고객의 주문도 처리하도록 허용된 동안 직원의 개인 매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 외부 변호사가 제공하는 대응 정보를 포함하여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한 답변을 시장규제부에 제공
- 옴니버스 계좌 구조 내의 고객을 포함하여 고객에 할당되는 Globex 운영자 ID(Operator ID)의 생성,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독 절차 수립
- ATS를 시장에 적용하기 이전에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수행
- 시장에 적용하기 전에 ATS와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 수정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ATS의 작동을 알리고(거나) 중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또는 경보 시행
- ATS 모니터링 또는 ATS가 방치된 채로 운영되도록 두는지 모니터링
- ATS를 비활성화한 보호 조치를 트레이더가 수동으로 중단하는 것을 방지
- 근본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한 ATS를 적용할 때 기존 정책 및 절차를 준수
-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하지 않고 오작동이 발생한 ATS를 재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수립

**Q2: 규정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감독 절차는 무엇인가요?**

A2: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거래소 규정, 규정 변경,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 (Market Regulation Advisory Notices), 특별 행정 보고서 (Special Executive Reports) 및 제재 공지문 (Notice of Disciplinary Actions)에 대하여 거래소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직원 및 대리인을 교육하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참석 기록을 유지하며, 거래소 규정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 직원 및 대리인에게 보낸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상설 방침(standing policies)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규제부는 특정 거래소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 또한 해당하는 거래소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매매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거래소의 대량매매 규정, 지침 및 공지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당사자가 서로 다른 상품 그룹에 걸쳐 대량매매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대량매매 보고 시간 요건등과 같이 특정 상품에 해당하는 규정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감독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시장 활동에 관련된 모든 거래소 규정에 대한 교육이 최소한으로 기대되지만, 당사자의 자체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결과 및 규제 기관의 질의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규정 위반을 탐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감독 조치는 무엇인가요?**

A3: 시장규제부는 감시 프로그램의 타당성이 당사자의 거래소 활동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장규제부는 사용된 감시 및/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유형, 내용 및 범위 뿐 아니라 위반 행위를 식별하는 데에 성공적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및/또는 감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시장규제부는 위반 행위의 지속 기간, 행위의 범위 및 폭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 연관된 직원 또는 대리인의 수, 그들의 회사에서의 책임 및 행위에서의 그들의 역할). 시장규제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위반 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장규제부 혹은 다른 규제 기관에 의해 해당 행위를 처음 통보받았는지 여부 또한 고려할 것입니다.

**Q4: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정 조치는 무엇인가요?**

A4: 시장규제부는 규정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 활동 보다 큰 맥락에서 식별된 규정 위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정 조치를 고려합니다. 시장규제부는 위반 행위와 비준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취한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거래 전략과 감시 및/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해당되는 경우), 직원에 대한 향상된 훈련 및 교육, 규정 위반 유형을 다루는 직원의 실질적 변경 및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자에 대한 내부 징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장규제부는 잠재적 위반 행위 또는 비준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노력에 대해 전체적인 관점을 취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규제부는 위반 또는 비준수 활동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시정 조치가 충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시장규제부는 위반 또는 비준수 활동의 재발을 시정 감독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5: 당사자의 성실한 감독 의무가 준법감시직원의 고용을 요구하나요?**

A5: 시장규제부는 회사의 행위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자원이 감독 및 규정 준수 활동에 전담하기를 기대합니다. 전술된 내용에 불구하고, 모든 당사자는 직원과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할 것이 요구됩니다.

**Q6: 규정 432.W. 및 본 권고 공지문의 맥락에서 누가 "대리인"으로 간주되나요?**

A6: 시장규제부는 본 규정의 목적에 있어서 당사자의 제 3자 벤더, 외부 변호사 및 기타의 고용이나 사무실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장규제부는 ATS를 해당 ATS를 운영하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Q7: ATS를 운영하는 당사자의 추가 감독 책임은 무엇인가요?**

A7: 거래소 규정에 따라 또는 적용이 되는 자동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ATS 또는 전략이 운영되는 동안 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하며, ATS와 관련한 교란이나 위반 행위, 또는 잠재적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ATS 또는 전략의 기능이나 운영을 개발, 설계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ATS 또는 전략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거나, 거래소 또는 다른 시장참가자의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 거래에 관여된 당사자는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8: 보다 정교한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에는 당사자가 다른 감독 수준을 적용하도록 기대되나요?**

A8: ATS에 사용된 기술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위험 관리 외에 적절한 감독 프로세스 및 통제 수단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및 통제 기능이 시스템 또는 전략에 사용된 특정 기술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당사자는 사용 중인 기술에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내린 결정이나 조치를 추적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역량에 따라 거래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강화된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9: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CME Group 시장에서의 접근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제재 조치의 대상자인 경우, 청산 회원사, 선물 거래 중개회사(futures commission merchants), 인트로듀싱 브로커(introducing broker) 및 해외 브로커(foreign broker)를 포함한 중개인의 감독 책임은 무엇인가요?**

A9: 규정 418에 의거하여 거래소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소 규정 435는 정지되거나 제명된 당사자는 그러한 정지 또는 제명 기간 동안 그 어떤 멤버십 특권도 누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특권은 CME Group이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지닌 지정 계약 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파생상품 청산 기관(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또는 스왑 거래 플랫폼(Swap Execution Facility)에의 직간접적 접근 권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거래소 규정 432.S.은 이사회, 거래소 직원 또는 청문위원회(hearing committee)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거래소 규정의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거래소로부터 당사자가 CME Group 시장으로부터 접근 정지되었거나 금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중개기관(intermediaries)은 해당 통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되며, 여기에는 CME Group 시장에 대한 대상자의 접근을 종료하거나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중개기관은 접근 정지 또는 금지된 참가자가 CME Group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 절차 및 통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청산회원사에 비공개 방식으로 보유되는 옴니버스 계좌에 대해 청산회원은 청산회원의 옴니버스 고객이 옴니버스 계좌 내의 고객이 거래소의 통지를 위반하여 CME Group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 절차 및 통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거래소 규정 576 및 관련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은 청산회원사는 시장규제부의 요청 즉시 신원을 획득하여 제공하거나, 옴니버스 고객으로 하여금 비공개된 옴니버스 계좌 내의

Globex 운영자 ID에 부여된 개인의 신원을 획득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는 데에 실패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규정 432.W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 정지 또는 금지된 당사자와 이름 또는 신원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있는 경우, 중개기관은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상자에 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시장규제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Q10: CME Group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 책임이 있나요?**

**A10:** 거래소 규정 418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또는 적용이 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선물 거래 중개인(futures commission merchant), 인트로듀싱 브로커(introducing broker), 주문관계인(associated person), 또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foreign Person)은 거래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거래소 규정 432.W.는 이러한 당사자,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중개기관(intermediaries),에게 고객의 거래 활동을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는 고객이 거래소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고지가 있을 때에 거래소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떠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1: 회사가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기대되는 감독 책임은 무엇인가요?**

**A11:** 시장규제부는 정례적으로 정보 제공 요청 서한을 보냅니다. 당사자는 정보 제공 요청 서한에 완전하고 정확하며 기한에 맞게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을 수집하는 데에 관련된 당사자 (예 : 청산 회사, 인트로듀싱 브로커, 해외 브로커 등)는 답변이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됩니다. 또한, 규정 574 (“Globex 액세스 제한”)에 의거하여, 청산 회원이 직접 연결(direct connection)을 허가한 자에 의한 Globex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actual) 또는 추정적(constructive)인 거래소 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거래소의 이익 또는 안녕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Q12: CME 트레이딩 플로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있는 회원의 감독 책임은 무엇인가요?**

**A12:** CME 규정 501 (“회원의 직원”)에 의거하여, 트레이딩 플로어에 고용한 거래소에 등록된 사람이 있는 회원은 그들의 등록된 직원들이 모든 거래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감독 의무는 그 직원이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다른 회원을 위해 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